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첫걸음

일학습병행제 길라잡이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 본 길라잡이에 수록된 내용은 일학습병행제 지침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032)820-8641~8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꿈, 길을 찾다

“일학습병행제 길라잡이는
일학습병행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부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이 만들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10점만점에 10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
터
스
스
터
스
스
터
스

청년 스타일을 살리자

사람이 필요한 기업, 기업이 필요한 사람!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 병행제

www.bizhrd.net

참여방법 : 재직자-정기공모
재학생-수시공모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032) 510-2125,2151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032) 450-0371~2
참여문의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032) 810-6541~2
	인천재능대학교	032) 890-7044
	유한대학교	02) 2610-0352
대표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032) 820-86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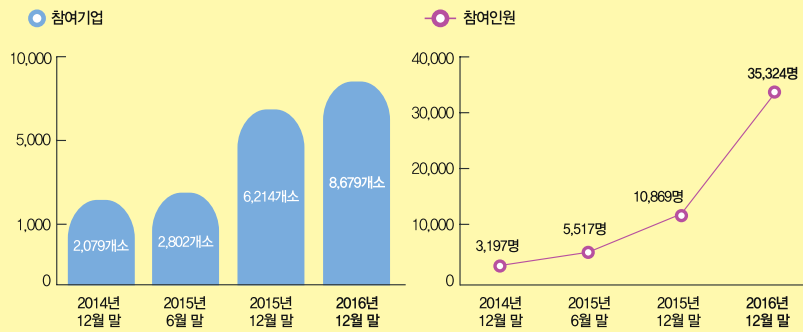
※ 참여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일학습병행제란?

-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직업 교육 훈련제도'입니다.
- 기업 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가 NCS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공동훈련센터,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는 산업계 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사업현황

2016년 말 8,679개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6,214개소 기업에서 35,324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종료하였습니다.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 근로자 추이 |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일학습병행제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현실	새로운 직업교육 방식 도입
<p>교과목, 이론 중심으로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배운 것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차이 발생 • 학생들은 채용시험을 위한 어학성적 등 스펙에 집중 •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발생 	<p>일학습병행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실무 간의 괴리 해소 • 기업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 제공 • 교육 수료 학습근로자 역량 평가 후 자격 또는 학위 부여

일학습병행제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 불필요한 스펙은 줄이면서 빠른 취업 가능
- 현장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
- 교육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
- 조기 채용으로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 가능



- 젊은 인재 선점으로 장기근속 가능
-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업 핵심인재 육성 가능
- 교육훈련 미스매치해소
- 기업의 재교육 비용 대폭 감소

참여 문의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032)510~2125, 2151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032)450-0371~2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032)810-6541~2

인천재능대학교 (032)890-7044

※ 일학습병행제 사업 관련 컨설팅은 무료입니다.

❖ 신청 관련 : 기업일학습 홈페이지 참조 (www.bizhr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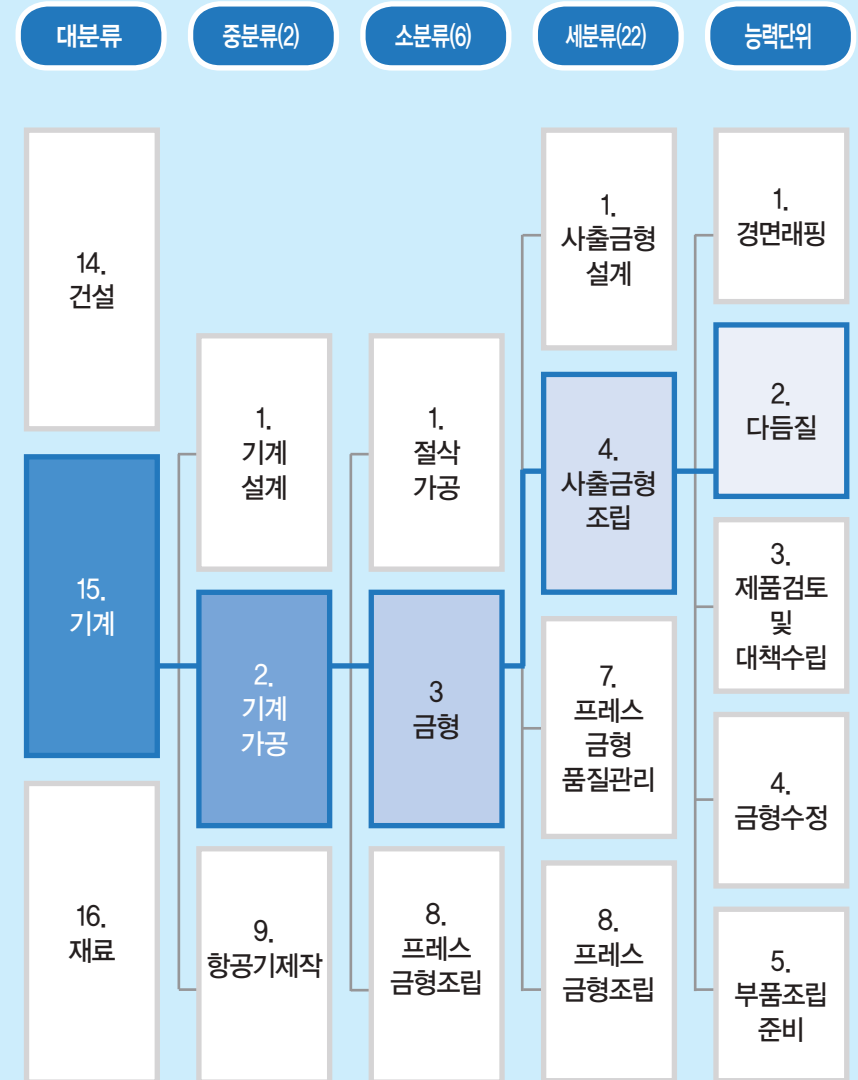
NCS 분류체계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대분류(24) → 중분류(80) → 소분류(238) → 세분류(887개)'의 순으로 구성

→ 분류 마련을 위해 직업분류, 산업분류 및 자격분류 전문가, 해당산업 분야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직종구조분석 시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사업관리	1	2	5
02. 경영·회계·사무	4	11	27
03. 금융·보험	2	9	35
04. 교육·자연·사회과학	3	5	13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	4	15
06. 보건·의료	2	7	34
07. 사회복지	3	6	16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	9	63
09. 운전·운송	4	7	26
10. 영업판매	3	7	17
11. 경비·청소	2	3	6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4	12	42
13. 음식서비스	1	3	9
14. 건설	8	26	109
15. 기계	10	29	115
16. 재료	2	7	34
17. 화학	4	11	32
18. 섬유·의복	2	7	23
19. 전기·전자	3	24	72
20. 정보통신	3	11	58
21. 식품가공	2	4	20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	4	23
23. 환경·에너지·안전	6	18	49
24. 농림어업	4	12	44
합계	80개	238개	887개

NCS 분류 체계도 [기계 금형분야(분류예시)]




알쏭달쏭 용어정리

- (일학습병행제 기업) :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으로, 심사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기업
-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직무분석 및 수요파악을 통하여 NCS를 기반으로 각 기업에 맞게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
- 현장훈련(OJT : On the Job Training) :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의 훈련 중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훈련
- 현장외훈련(Off-JT : Off the Job Training) : 별도의 공간에서 이론 및 이론관련 실습으로 진행되는 훈련
- 단독기업형 : 기업이 주도하여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훈련(OJT)과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
- 공동훈련센터형 : 기업 여건상 자체적으로 훈련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하는 유형
- 학습근로자 : 인증된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일학습병행제 기업과 훈련근로 계약을 체결한 훈련생이자 근로자
- 기업현장교사 : 일학습병행제 기업 내에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담당하고, 학습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내 트레이너

구분	주요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1. 단독기업형	단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인재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전문훈련 교육기관	기업
2. 공동훈련센터형	외부 전문훈련기관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의 특징 |

- HRD담당자 : 일 학습병행제 기업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 내부평가(1차 평가) : 기업이 자체적으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 외부평가(2차 평가) : 지정된 평가 기관이 외부전문가 및 기업현장교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
- NCS 기반자격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직종 및 종목을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설계한 것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y Sector Council) : 해당 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기준 및 인증기준 개발·보완,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담당하는 산업별 협의체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 Regional Council) : 기업 발굴 및 훈련 실시 촉진, 해당 분야의 학습근로자 모집 지원 등 일학습병행제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 고교(특성화고) 재학생 단계에서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로 고용노동부 - 교육부 공동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단
-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기술융합형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도제학교) 훈련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융합형 고숙련 기술훈련 과정
- 유니테크(Uni-Tech) : 고교(특성화고등학교) - 전문대학 - 기업이 연계된 고등학교와 전문대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와 이론을 배우는 재학생 단계의 '산학연계 통합 교육' 제도
-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 대학 3~4학년 재학생들이 기업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는 등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일학습병행제 길라잡이

CONTENTS

- 01 일학습병행제
- 02 약정서(재직자, 재학생)
- 03 산학일체형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 04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 05 유니테크(Uni-Tech)
- 06 P-Tech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07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유관기관 연락처
- 08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 09 청년내일채움공제

01 일학습병행제 개요



산업현장에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이하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NCS 기반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자체 또는 학교 등 교육 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훈련기간: 12개월~4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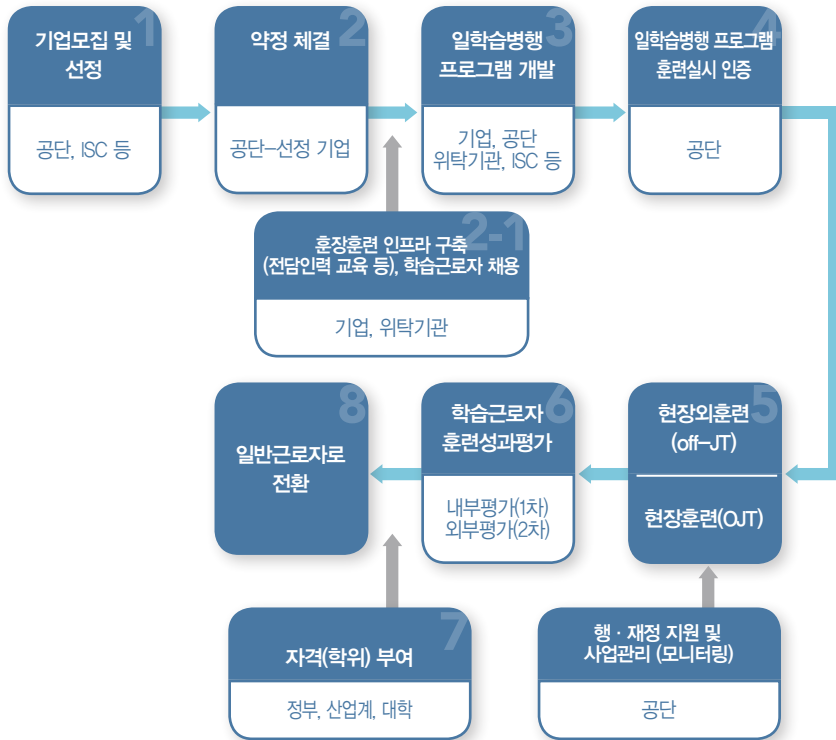
02 일학습병행제 참여유형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주요특징	기업이 현장외훈련 및 현장 훈련(Off-JT & OJT) 모두 실시	Off-JT 실시, OJT 지원, 훈련관리(기업 컨설팅 포함), 프로그램 개발 참여, 현장교사 지원 등
현장외훈련 Off-JT 주체	해당 기업 자체 실시 ※ 일정 요건 하에 외부위탁 가능	공동훈련센터(산업별단체), 대학, 교육훈련기관 등
현장훈련 OJT 주체	기업	기업
관리전반주체	기업	공동훈련센터 및 기업

03 일학습병행제 인정유형

	NCS기반자격형	NCS기반자격형+ 대학(학위)연계형	모듈자격형
주요특징	평가를 통해 자격형태로 인정	자격 인정+ 학위연계	ISC 등이 주관하여 기업과 내부평가
프로그램 개발조건	인증기준에 따라 개발	인증+학점 기준 등 요건에 따라 개발	인증기준에 따라 개발
관련기관	고용노동부/공단/ISC	고용노동부, 교육부/공단 ISC/ 대학 등	기업/ISC/공동훈련센터
비고	국가 또는 산업계 인정	학위 교육부/ 대학 인정	이수증

04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같은 시간에 중복 수강하는 경우
- 청년인턴제 등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사업의 임금보전성 지원금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 * 취업성공수당 등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성 지원금은 무관함
- 기업의 의사에 따라 참여 포기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공단-기업간 약정 해지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기지원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정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학습병행제 사업약정 해지될 수 있음
- 훈련 실시 이후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률*이 높을 경우 차기훈련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퇴사 등의 이유로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학습근로자의 비율

05 선정기업

구분	내용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역량이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 :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군)에 대해서는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훈련실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업 본사 기준 관할 지부·지사로 신청
신용등급	◎ 신용등급 B등급 미만도 참여 가능
대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기준 - F5(영주권자), F4(재외동포), F6(다문화가정배우자) 비자 소지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업종 및 직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600시간 이상) 이수함. 모듈자격형은 300시간 이상되어야 함. * 체계적·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제외
임금체불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가능
산재 다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산업재해 공고" 참조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제한됨.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중 신청시점에 행정처분 효력기간인 경우
- ✓ 이전에 일학습병행제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일학습병행제 참여요건을 충족하였다더라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 일학습병행제 인프라 구축

교육 시간

기업현장교사

- 필수과정
- 전체 : 46시간
 - 집체 : 31시간(3박 4일)
 - 온라인 : 15시간

심화과정

- 전체 : 50시간
- 집체 : 16시간(1박 2일)
- 온라인 : 34시간

HRD담당자

- 전체 : 12시간
- 집체 : 7시간(1일)
- 온라인 : 5시간

자격 (기업현장교사)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 ②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자격이 있는 자,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④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또는 ⑤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역할

훈련실시 및 운영

기업 내 훈련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훈련프로그램 개발 참여, 학습도구개발, 훈련실시 및 운영, 학습근로자 관리, LMS(학습관리시스템) 활용 학습관리 등

행정지원

기업 내 훈련, 예산관리 및 정부 지원에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 및 지원, HRD-Net 전산 등록 처리 등

07 학습근로자 모집·선발



학습근로자

사용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따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
*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나 청년층 중심

🔊 학습근로자 모집

- ❖ 기업은 조기 훈련실시 위해 가급적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된 시점부터 학습근로자 모집 진행
 - 기업 자체, 등의 채용박람회, work-net(www.work.go.kr) 구인 등 활용
 - * 공동훈련센터형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기업 학습근로자 모집 지원
 - * 훈련프로그램의 훈련실시일 기준 1년 이내 입사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 F5(영주권자), F4(재외동포), F6(다문화가정배우자) 비자 소지자 가능-> 고용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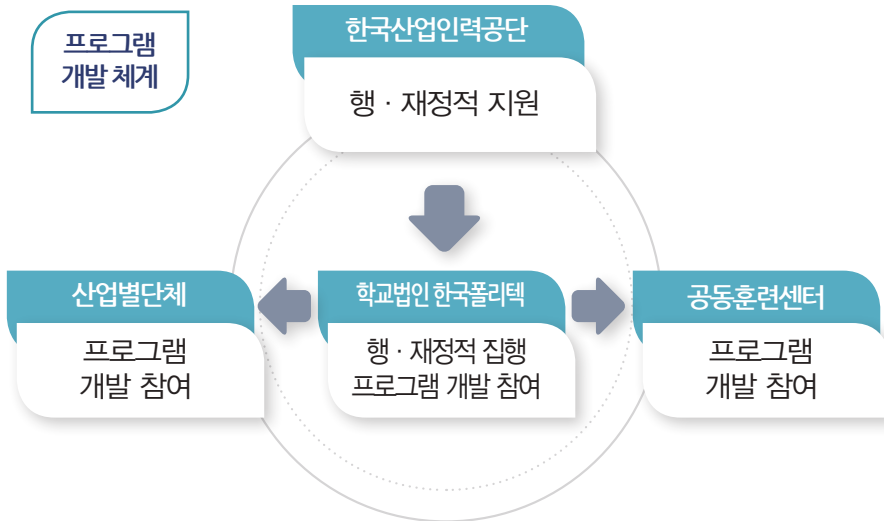
📄 훈련근로계약체결

- ❖ 훈련근로계약은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활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형태로 체결 가능
 - * 현재 참여기업의 97% 정규직 형태로 계약체결
 - * 청년인턴 출신을 학습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 형태로 훈련근로계약 체결
- ❖ 훈련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일학습병행제 훈련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 훈련시작일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함.
 - * 학습근로자를 훈련시작일 이전에 채용한 경우, 일반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시작일부터 훈련근로계약으로 변경

학습근로자 채용 시 유의 사항

- ❗ 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장기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도 가능
- ❗ 부정예방 조치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08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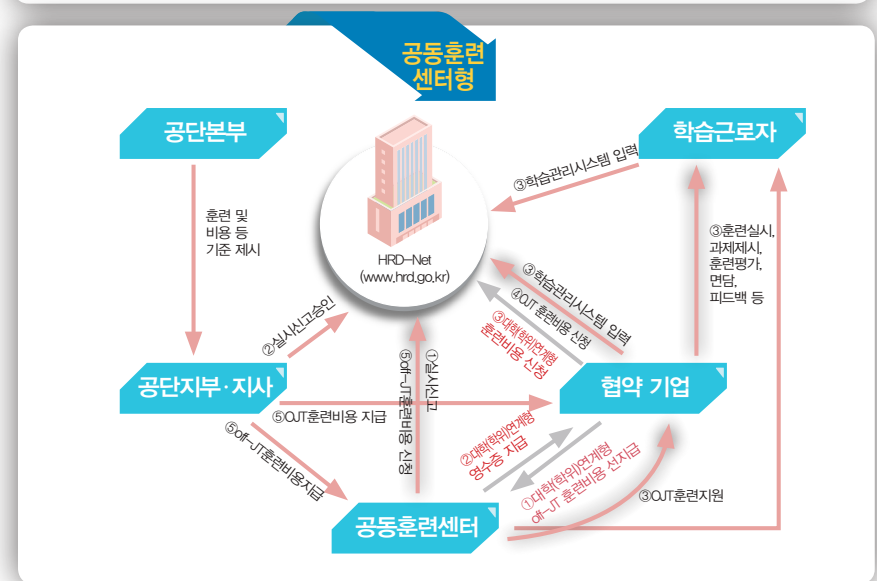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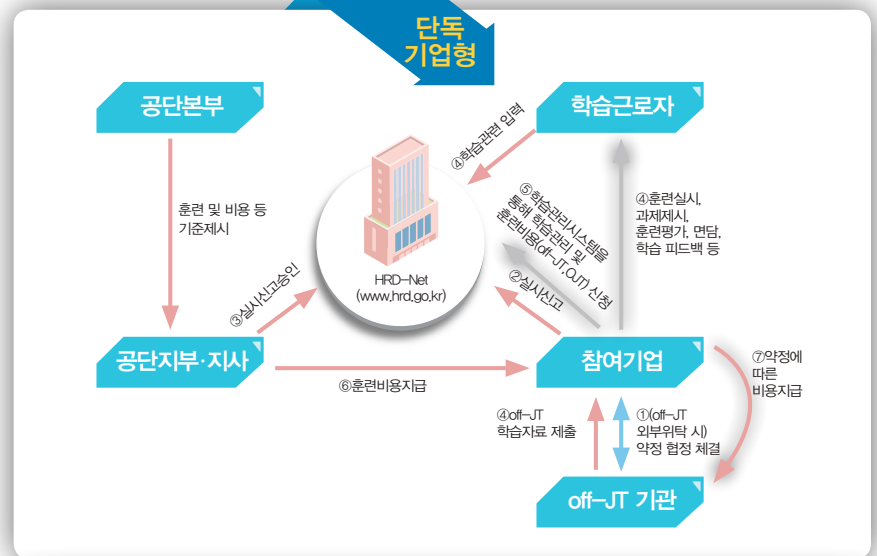
개발 기준

- NCS기반자격과정
 - 재직자 : 필수능력단위 70%이상 활용
 - 재학생 : 필수능력단위 100%활용
- 모듈과정
 -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전체 훈련시간의 40% 이상을 편성
 - ※ 상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시 PM과 협의

Attention

- ☞ 프로그램 인증후 10일 이내 훈련실시(토·일 공휴일 제외)
- ☞ 프로그램은 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개발 완료 원칙
- ☞ 프로그램과 함께 3개월 이상 분의 OJT 학습도구 개발 병행

09 훈련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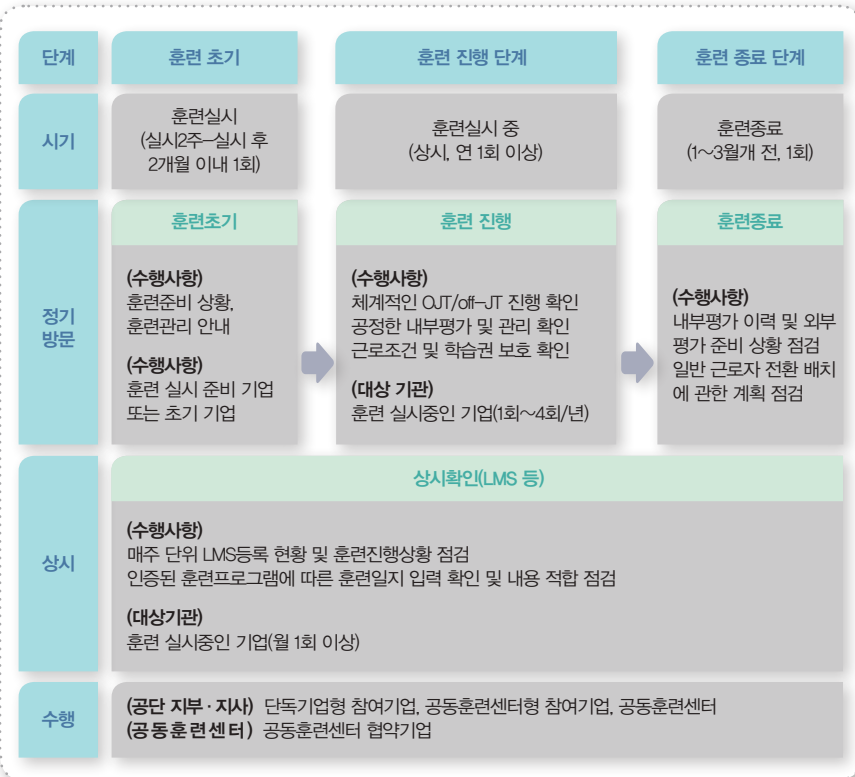
Attention

- ☞ 훈련시작일 7일 이내 HRD-Net상에 훈련실시 신고 등록 처리
- ☞ HRD-Net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학습관리 등록

10 모니터링(컨설팅)



기업 현장 중심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LMS를 기반으로 공단(훈련모니터링), 폴리텍(자문형 컨설팅), 지방관서(전담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중층적 질관리 체계



지도 감독
(현장 지도·감독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부정·부실 의심 사업장은 지방관서 전담감독관 주도로 현장점검 실시
 → 지방관서 일학습병행제 전담감독관('15년 224명 지정) 주도로 현장점검 실시
 '14. 07월 부터 직업능력개발/근로감독분야/산업안전보건 분야 각 1명씩 전담감독관 지정

11 학습근로자 평가

내부평가

평가문제	내부평가문제 및 평가기준은 시행일 5일전까지 마련하고, 현장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할수 있도록 상시보관(평가일로부터 3년간)
평가시기	1. 능력단위(교과목)별 훈련 진도를 80%이상 시점부터 해당 능력단위(교과목) 훈련 종료시까지 실시하되, 탈락자는 전체훈련 종료 전까지 추가 재응시 기회 최소 1회 이상 제공 2. 여러개의 능력단위를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전체훈련과정 진도를 40%시점과 80%시점까지는 반드시 평가하여야 함 3. 1년 이상의 과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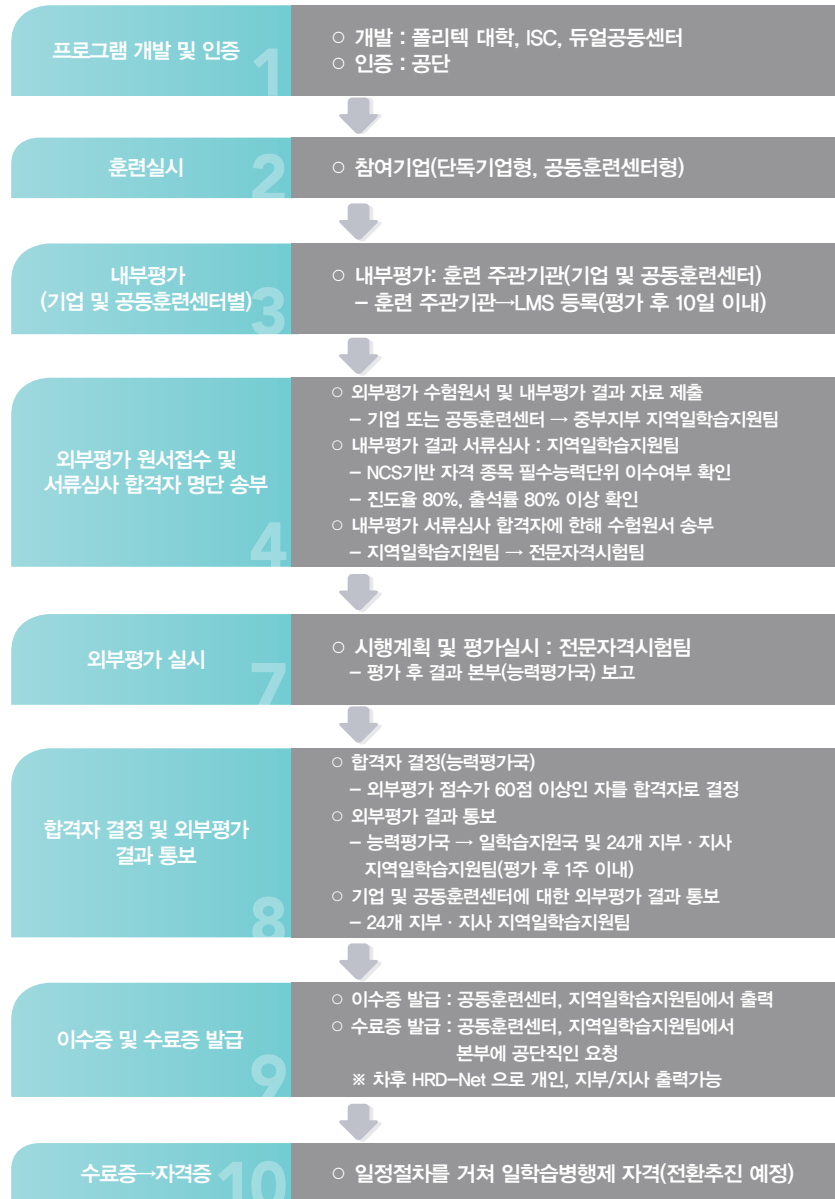
외부평가

평가문제	ncs.go.kr사이트에서 자료실/NCS기반자격에 있는 문제원형 참조
응시대상	1. (진도80%시점) 전체시간 80%이상, 전체시간 80%이상, 필수능력단위 꼭 패스 2. (진도 100%시점) 모든 능력단위 모두 패스
이수조건	모든 내부평가 능력단위 패스
수료조건	모든 능력단위 패스하고, 외부평가 합격한 경우

HRD-NET 내 · 외부평가 입력절차



10 학습근로자 평가 절차



※ 결과보고(5), 시행계획수립(6)은 생략

11 재정적 지원(단독기업형) : 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1개(580만원), 2개(750만원), 3개(890만원)		· 개발기간 : 2개월 내외 소요 · 연간 훈련시간 : 600~1,000시간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160만원~420만 원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현장훈련 (OJT)비용	‘15.4.1. 이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2015.4.1. 이전 선정기업 중 선정 후 1년내내 훈련 실시 신고를 한 훈련만 해당
	‘15.4.1. 이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현장외훈련 (Off-JT)비용	기업 자체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기업에 지급 *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외부 위탁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지원안함	·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 100만 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월 330,000원 한도 * 기업내에서 Off-JT(기업 자체훈련)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1,000이상 기업 프로그램개발비 : ‘16. 11. 17이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적용

※ 상시근로자 1,000이상 기업 전담자수당 : ‘16. 11. 17이후 부터 실시하는 신규참여 대기업의 훈련

12 재정적 지원(공동훈련센터형) : 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 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업	비 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1개(580만 원), 2개(750만 원), 3개(890만 원)		· 개발기간 : 2개월 내의 소요 · 연간훈련시간 : 600~1,000시간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학습도구지원 · 컨설팅	· 160만원~420만 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현장훈련(OJT)비용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OJT 훈련비 10% 추가 감액 (단,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현장외훈련 (Off-JT)비용	·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단, 대학연계형은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공동훈련센터에 개별기업 OJT 훈련비의 10% 추가 지급 (단,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 현장외훈련의 조정계수는 사업주 훈련 조정계수 참조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 최대 월 40만 원	· 지원안함	· 훈련실시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 100만 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 (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월 330,000원 한도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1,000이상 기업 프로그램개발비 : '16. 11. 17이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적용

※ 상시근로자 1,000이상 기업 전담자수당 : '16. 11. 17이후 부터 실시하는 신규참여 대기업의 훈련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1. 사 업 명 : 일학습병행제 사업

2. 참여기업명 : ○○○주식회사

대 표 자 : △△△

소 개 지 :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에 관하여 한국산업
인력공단과 참여기업은 불임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불임 :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 주 식 회 사

본 부 장 △ △ △ (인) 대 표 △ △ △ (인)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주)○○○(이하 "일학습병행 기업"이라 한다)은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일학습병행제(이하 "일학습병행"이라 한다) 사업 수행 및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이 안정적 정착과 학습근로자의 대우, 보호 및 직무능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단 지원 사항)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훈련 인프라 구축 및 실시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1. NCS 기반 자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비용 포함)
2.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비용(위탁교육비 포함) 지원
3. 훈련 실시를 위한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의 수당 및 양성교육비 지원
4. 학습근로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지원
5.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에 대한 대부 중 지원 (해당 요건 만족할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원활한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기업 준수 사항) 일학습병행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운영 및 보편성에 별급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기업 준수사항을 따른다.

1.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학습근로자의 적극적인 모집·채용
2. 학습근로자에게 인준된 일학습병행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인준 후 10일(보·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훈련 실시 및 제공
 - * 훈련프로그램개발 소요기간: 기업인정 이후 2개월 내외
3. 학습근로자리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4. 기업 자체 인력 중에서 역량 및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기업현장교사를 발굴·육성(기업현장교사 연수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HRD 담당자 연수는 프로그램 개발 인준 전 이수를 원칙으로 함)하여 학습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5. 현장훈련과 더불어 필요한 양질의 이론 및 심층교육을 제공하고, 작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6. 학습근로자의 평가를 위하여 학습근로자의 출결, 성취도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
7. 교육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료, 실습재료, 개인용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

8. 내부평가 및 서류심사에 합리적 훈련과정 이수자가 이수한 날로부터 최초 시행되는 외부 평가에 응시하도록 지원. 단, 기업의 사정으로 최초 시행되는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훈련과정 이수자가 이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외부평가에 응시하도록 지원
9.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근로자로 전환. 단,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10. 제9조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인사·승진·급여·보상 체계 등에 있어서 사업장 내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함
1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2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3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12. 학습근로자의 일부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3.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도중 기업의 귀회사유로 훈련이 중단될 경우, 기업은 학습근로자의 고용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
14. 일학습병행 기업은 참여 신청 단계에 산업재해 발생권수 등 공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채용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8조의2) 대상 여부 및 행정 처분 등 이력을 공단에 고지해야 하며, 기업실정 이후 위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한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15. 일학습병행 기업은 훈련을 실시중인 학습근로자가 사업주훈련, 전소사업 훈련 등 다 제격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복 수강하게 될 경우 등 사항을 해당 훈련의 최종인정 신청에 앞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16. 제14호의 기업 준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둘 사람이 향후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등을 통해 사후에 확인될 경우 제4조에 의한 약정해지 및 제5조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4조(약정해지 등) 공단은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기업과 이 약정을 해지하거나 일학습병행 훈련을 정지할 수 있다.

1. 기업이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일학습병행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기업이 약정 위반 행위를 하거나 모니터링 또는 지도점검 시 훈련부실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을 위해 개발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이 정부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4. 기업이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5. 부정행위(부정행위를 하려는 자 포함)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일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단이 정격적 측면에서 일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교단계 인·학습 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주)○○○(이하 "인·학습병행 기업"이라 한다)는 인·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인·학습병행제(이하 "인·학습병행"이라 한다) 사업 수행 및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인·학습병행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학습근로자의 대우, 보호 및 직무능력 배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단 지원 사항) 공단은 인·학습병행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훈련 인프라 구축 및 실시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1. NCS기반 자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인·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비용 포함)
2. 인·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비용(위탁교육비 포함) 지원
3. 훈련 실적을 위한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의 수당 및 양성교육비 지원
4. 학습근로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지원
5.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에 대한 대부 등 지원 (해당 요건 만족할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원활한 인·학습병행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기업 준수 사항) 인·학습병행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운영 및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기업 준수사항을 따른다.

1. 인·학습병행에 참여할 학습근로자의 적격적 모집·취용
2.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3. 기업 자체 인력 중에서 역량 및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기업현장교사를 발굴·육성(기업현장교사 연수는 기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HRD 담당자 연수는 프로그램 개발 인증 전 이수할 원칙으로 함)하여 학습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4. 현장훈련과 더불어 필요한 양질의 이론 및 심층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장 밖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5. 학습근로자의 평가를 위하여 학습근로자의 출결, 실적도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관리
6. 교육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에게 훈련교재, 심층재료, 개인용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
7. 내부평가 및 서류심사에 협력한 훈련과정 이수자가 이수한 날로부터 최초 시행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도록 지원. 단, 기업의 사정으로 최초 시행되는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훈련과정 이수자가 이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외부평가에 응시하도록 지원

8. 인·학습병행 프로그램 참여 학습근로자가 인·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근로자로 전환, 단,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를 외부평가 최종합격 이전이라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9. 제8조에 따라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인·학습병행 급여보상 체계 등에 있어서 사업장 내 동등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함
10.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라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8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11.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2. 인·학습병행 훈련실시 도중 기업과 귀책사유로 훈련이 중단될 경우, 기업은 학습근로자의 고용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
13. 인·학습병행 기업은 참여 신청 단계에 산업재해 발생경수 등 공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2), 재발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대상 여부 및 행정처분 등 이력을 공단에 고지해야 하며, 기업선정 이후 위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한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14. 인·학습병행 기업은 훈련을 실시중인 학습근로자가 사업주훈련, 권고사실 훈련 등 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복 수강하게 될 경우 등 사함을 해당 훈련의 과정인정 신청에 앞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15. 제14조의 기업 준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중 사항이 향후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등을 통해 사후에 확인될 경우 제4조에 의한 약정해지 및 제5조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4조(약정해지 등) 공단은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학습병행 기업과의 약정을 해지하거나 인·학습병행 훈련을 정지할 수 있다.

1. 기업이 인·학습병행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인·학습병행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기업이 약정 위반 행위를 하거나 모니터링 또는 지도점검 시 훈련부실로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등 정상적으로 인·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인·학습병행 사업 운영을 위해 개발한 인·학습병행 프로그램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4. 기업이 인·학습병행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5. 부정행위(부정행위를 하려는 자 포함)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인·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단이 정책의 측면에서 인·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참여제한 등)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약정 해지된 기업은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 인·학습병행 사업에 재참여할 수 없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로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제도

● 도입목적

학생이 졸업 후 구직기간 단축, 취업 후 직무 만족도 및 현장 적응력 제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조기 확보 및 경쟁력 강화, 국가 전체적으로는 핵심분야 산업인력 확충 및 청년 고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 됨. 우리나라의 학교중심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함

● 도입학교 현황

구분	지역	학교명(사업단 명)	참여학교	분야
'14 년도 선정 (1차)		63개 사업단	198개 고교(중복참여 제외시 167개)	
	경남	창원기계공고	단일사업단	기계가공
	광주	광주공업고		기계가공/설계
		광주전자공업고		기계가공/설계
	인천	인천기계공업고		기계가공
	대구	대구공업고		기계가공
		두원공업고		기계가공
	경기	시화공업고		기계가공
전남	광양하이텍고	금속재료		
경북	경북기계금속고	기계가공		
'15년도 선정 (2차)	서울	성동공업고	5개교(성동공업고, 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절삭가공
		용산공업고	5개교(용산공업고, 서울전자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전자기기
	부천공업고	3개교(부천공업고, 산본공고, 김포제일공고)	금형	
	경기	경기자동차과학교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교, 부천공업고, 산본공고, 의정부공고)	자동차정비
		평촌공업고	3개교(평촌공고, 부천공업고, 군자공고)	전자기기, 응용개발
	인천	부평공업고	3개교(부평공업고, 청학공고, 도화기계공고)	절삭가공

제6조(비판 등) 일학습병행 기업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절적으로 기 직원 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공단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점부터 추가 지원을 중단한다.

1. 일학습병행 기업이 지원금을 리해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2. 지원금을 당사의 목적대로 사용 또는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약정이 해지되거나 훈련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제 6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 개발중이거나 인종 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경우에 한함

제7조(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일학습병행 기업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이 일학습병행제, 청장년인력제 등 각종 직업능력 및 고용안정 사업의 연계조정 목적 으로 기업 정보 및 학습근로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학습근로자로부터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 여야 한다.

제8조(추가 약정)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단과 일학습병행 기업이 별도로 협의하 여 서면으로 추가 약정할 수 있으며, 추가 약정한 사람은 본 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준용)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0조(소송의 관할 등) 본 약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소송은 공단이 소위 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공단과 일학습병행 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주 소 :

주 소 :

대 표 △ △ △ (인) 본 부 장 △ △ △ (인)

구분	지역	학교명(사업단 명)	참여학교	분야
'16년도 선정 (2차)	충남	운산공업고	3개교(운산공업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화학공학
		천안공업고	5개교(천안공업고, 운산공업고, 아산전자기계고, 충남조선공업고, 논산공고)	절삭기공
	대전	대전전자지대지인고	3개교(대전전자지대지인고, 경덕공고, 계룡공고)	전기전자
	세종	세종하이텍고	단일사업단	화학, 기계, 재료
	대구	대구서부공업고 (공동실습소)	5개교(경북공업고, 경상공고, 대구서부공업고, 조일로봇고, 대중금속고)	절삭기공
	경북	경주공업고	3개교(경주공고, 흥해공고, 금호공고)	절삭기공
	경남	진주기계공업고	4개교(진주기계공업고, 경남항공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절삭기공
	전남	목포공업고	4개교(목포공업고, 해남공고, 진도실업고, 구림공업고)	용접
		영암전자과학고	5개교(영암전자과학고, 영광전자고, 순천전자고, 정남진산업고, 장성실업고)	전자응용
강원	원주공업고	3개교(원주공업고, 영월공고, 강릉중앙고)	전자기기, 하드웨어개발	
'16년도 선정 (3-1차)	서울 (5)	서울공업고(1개교)	서울공업고	공업(기계)
		신진자동차고(4개교)	성수공고, 신진자동차고, 인덕공고, 휘경공고	공업(자동차)
		동일여자상고(4개교)	동일여자상업고, 서울건벤선고, 서일국제경영고, 신영여자상고	상업(관광)
		세명컴퓨터고(4개교)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털고, 세명컴퓨터고, 한양공고	IT(SW개발)
		휘경공업고(3개교)	광운공고, 한양공고, 휘경공고	공업(전기)
	경기 (2)	양영디지털고(4개교)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상고, 성일정보고, 양영디지털고	IT(SW개발)
		삼일공업고(4개교)	광명공고, 삼일공고, 수원공고, 수원전문산업고	공업(전자)
	인천(1)	대한미용사회(6개교)	경북생활과학고, 삼성생활예술고,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미용(헤어)
	강원(1)	춘천기계공고(4개교)	영월공고, 원주공고, 춘천기계공고, 태백기계공고	공업(기계)
	부산 (4)	대양전자통신고(4개교)	대양전자통신고, 대광발명과학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지대지인고	공업(전자)
		부산전자공고(3개교)	부산전자공업고, 대진전자통신고, 금정전자공고	공업(전자)
		경남공업고(4개교)	경남공고, 동의공업고, 부산에너지과학고, 경성전자고	공업(전기)
		부산공업고(4개교)	해운대공고, 부산항만물류고, 동아공고	공업(기계)
경남(1)	김해건설공고(4개교)	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공고, 창녕제일고	공업(기계)	

구분	지역	학교명(사업단 명)	참여학교	분야
'16년도 선정 (3-1차)	대구 (2)	영남공업고(4개교)	영남공고, 대구전자공고, 대구달서공고, 경상공고	공업(전자)
		상서고(3개교)	상서고, 경주삼성생활예술고, 대구관광고	조리(양식)
	경북 (2)	경북하이텍고(5개교)	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상산전자고, 상주공업고, 영천전자고	공업(전자)
		경주정보고(3개교)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상업(품질경영)
울산(1)	울산공업고(1개교)	울산공고	공업(기계)	
'16년도 선정 (3-2차)	광주(1)	금파공업고(2개교)	금파공고, 광주자연과학고	공업(기계)
		삼례공업고(3개교)	삼례공고, 전주공고, 진안공고	공업(기계)
	전북(1)	영광공업고(4개교)	영광공고, 담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나주공고	공업(기계)
		청주공업고(4개교)	청주공고, 충북전문기계고, 증평공업고, 제천디지털전자고	공업(전자)
'17년도 선정 (3-2차)	서울	충북공업고(3개교)	충북공고, 충주공고, 제천산업고	공업(기계)
		강경공업고(5개교)	강경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산업고, 공주정보고, 논산여자상고	상업(세무회계)
		예산전자공고(4개교)	예산전자공고, 흥성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공업(전자)
'17년도 선정 (3-2차)	서울	순천효산고	순천효산고	음식서비스
		은평메디텍고	은평메디텍고, 유한공업고, 영락유헤스고, 덕일전자공업고	전기전자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신진자동차고, 성남테크노과학고, 의정부공고, 부평공고	기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광명경영회계고, 인평자동차정보고	정보통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용산공고, 유한공고, 휘경공고	기계
	충북	이랜드건설	강서공고, 인덕공고	건설
		진천산업고	진천산업고, 충북상업정보고, 증평정보고, 보은정보고, 충주산업고	경영·회계·사무
	경기	평촌경영고	평촌경영고, 광명경영회계고, 삼일산업고, 인천세무고	경영·회계·사무
	인천	인평자동차정보고	인평자동차정보고	기계
		인천하이텍고	인천하이텍고, 인천정보산업고, 부평공고, 재능고	전기전자
제주	중문고	중문고	보건/의료	
대구	경북여자상업고	경북여자상고, 대구제일여자상고, 대구여자상고, 구남보건고, 명인정보고	경영·회계·사무	

● 참여신청방법

인천도제지원센터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	(032)725-333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	(032)820-8646, 8648

● 훈련실시 관련 보험가입기준

- OJT(기업형, 센터형)실시일 기준으로 그 이전이나 실시일에 맞추어 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함

● 4대보험가입 관련기준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에 해당(고용보험법 제2조)하여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됨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구간정지제의 경우 장기간(1달 이상)기업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고용보험 효력을 유지한 채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 가능

- * 센터형 OJT 훈련의 경우 기업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정상가입 되어야 함

○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 적용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국민연금, 산재보험

- (국민연금) 만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대상)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IPP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기업이 원하는 대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학위)으로 인정하는 제도.

● 도입목적

학생이 졸업 후 구직기간 단축, 취업 후 직무 만족도 및 현장 적응력 제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기능 인력 조기 확보 및 경쟁력 강화, 국가 전체적으로는 핵심분야 산업인력 확충 및 청년 고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

● 도입학교 현황(23개 대학교)

대학교별 소재지 현황			
수도권	가천대학교	충청	순천향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광운대학교		배재대학교
	동국대학교	전라	한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강원	인천대학교	경상	대구대학교
	인하대학교		대구의대의대학교
	한성대학교		동의대학교
	강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인제대학교
			신라대학교

● 참여신청방법

IPP 사업단	인천대학교	(032)835-9436
	인하대학교	(032)860-9285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	(032)820-8681

● 훈련 실시 관련 보험 가입 기준

구분	유형 1(기존)	유형 2(추가)
훈련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프로그램 개시 시점 * 동 경우, 현장 외훈련비(OFF-J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훈련(OJT) 개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외훈련(OFF-JT) 기간 동안은 학습 근로자별 기업 지정만 하고 - 현장훈련(OJT) 개시 시점부터 기업과 훈련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훈련근로계약 및 4대 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실시한 현장외훈련(OFF-JT)의 경우 훈련비 지원 불가

※ 기업의 선택 유형과 무관하게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 진행 중 학습 근로자가 중도 탈락할 경우 성과평가 시 중도탈락율에 반영

● 4대보험가입 관련 기준

■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발생과 무관하게 훈련근로계약이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은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가입하여야 하며, 동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당연 적용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보험 개시 시점은 훈련근로계약서 효력 발생 시점이 됨.

* 예) 훈련근로계약서 및 보험 효력 시작일은 (유형 1)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 개시일이 되며, (유형 2)의 경우 현장훈련(OJT) 개시일이 됨.

* 참고로, (유형 2)를 선택한 기업이 '16. 9. 1부터 현장훈련(OJT)을 시작했으나 고용보험이 '16. 9. 15부터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전 기간('16. 9. 1~14)의 훈련은 인정되지 않으며, 훈련비도 지급되지 않음.

○ (유형 1)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현장외훈련(OFF-JT)훈련 기간에 학습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붙임1)'를 근로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제출

※ 문의처 :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부·지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국민연금, 산재보험

○ (국민연금)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외훈련(OFF-JT) 기간 급여가 미 발생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예외 적용 가능(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외훈련(OFF-JT) 기간 급여가 미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예외 적용 가능(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니테크(UNI-TECH)



유니테크(UNI-TECH)

고교-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고교-전문대)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제도

● 도입목적

학생이 재학 중 조기에 기업에 채용되어 입사부담, 취업부담이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전문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핵심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도입학교 현황(16개 대학, 16개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교	고등학교
수도권	대림대학교	서울생활과학고
	동원대학교	이천제일고
	두원공과대학교	안성두원공고
	유한대학교	유한공고
충청	재능대학교	재능고
	강동대학교	부원고
전라	신성대학	경기기계공고
	군장대학교	이리공고
	전남도립대학교	광주전자공고
경상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공고
	영남이공대학교	경북공고
	영진전문대학	대구달서공고
	경북전문대학교	문경공고
	구미대학교	대구전자공고
	경남정보대학교	부산관광고
동의과학대학교	경남공고	

● 참여신청방법

Uni-Tech 사업단	재능대학교	(032)890-7771
	유한대학교	(02)2610-0673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	(032)820-8642

● 훈련실시 관련 보험가입기준

구분	유형 1	유형 2
4대보험가입	고교 2학년 1학기 부터	고교 3학년 1학기부터 * 고교 2학년은 학생별 기업지정만 하고, 고교3학년 3월부터 기업과 훈련근로계약체결 및 4대보험 가입하여 교육훈련 실시 * Off-JT 실시시 학습근로자 보호대책(상해(실습)보험 가입 등) 마련 필수
기업 OJT 실시	고교 2학년 2학기 부터	고교 3학년 1학기부터 * (전제조건)고교 2학년 과정은 Off-JT로 실시하되, 30% 이상은 대학의 듀얼공동센터에서 실습으로 실시 * (전제조건)듀얼공동센터에서 실시하는 OJT는 고교 3학년 과정만 편성하되, 전체 OJT시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OJT는 근로시간에 포함)

※ 사업단 단위 또는 각 기업별로 유형 1을 원칙으로 하되, 유형 2 선택 가능

● 4대보험가입 관련기준

■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학습근로자에 대한 급여 발생과 무관하게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 산재보험은 근로자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가입하여야 하며, 동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당연 적용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보험 개시 시점은 훈련근로계약서 효력 발생 시점이 됨.
 - * 예) 훈련근로계약서 및 보험 효력 시작일은 (유형 1)의 경우 일학습 병행제 훈련프로그램 개시일(고교 2학년 1학기 훈련개시일('16. 3. 2.))이 되며, (유형 2)의 경우 고교 3학년 1학기 훈련개시일('17. 3. 2.)이 됨.
 - * 참고로, (유형2)를 선택한 기업이 '17. 3. 2.부터 3학년 1학기 훈련을 개시했으나 고용보험이 '17. 3. 15.부터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전 기간('17. 3. 2~ 14.)의 훈련은 인정되지 않으며, 훈련비도 지급되지 않음.
- (유형 1)의 고교 2학년 전체 기간 및 (유형 2)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예) 현장외훈련(Off-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간정시제 형태의 훈련으로 일정기간 현장외훈련(Off-JT)만 실시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월이 발생하는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붙임1)'를 근로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제출

※ 문의처 :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부·지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국민연금) 만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6조」)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http://www.nps.go.kr>)
-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 *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급여가 미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예외 적용 가능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P-TECH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 등을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전문대 단계 융합형 고숙련 기술훈련 과정으로 연계되는 제도

● 도입목적

도제학교 ·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기업 핵심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 성장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됨.

● 도입학교 현황(6개 대학교)

순번	기관명(캠퍼스)	NCS7기반자격	학과명(직종명)
1	인천캠퍼스	사출금형설계_L3	금형디자인(정밀금형)
		프레스금형설계_L3	
2		CNC밀링가공_L3	기계시스템(CT기계가공)
3	안성캠퍼스	CNC밀링가공_L3	CAD&모델링(CT기계가공)
4	광주캠퍼스	CNC밀링가공_L3	금형디자인(정밀금형)
5		CNC밀링가공_L3	컴퓨터응용기계설계(CT기계직종)
6	순천캠퍼스	용접_L4	산업설비(그린에너지설비)
7	대구캠퍼스	프레스금형설계_L3	금형디자인(정밀금형)
8	창원캠퍼스	CNC밀링가공_L3	기계시스템(CT기계가공)

※ 기관명 : 한국폴리텍대학

● 운영방식

구분	한국폴리텍대학	기업
운영대상	도제학교 인근 캠퍼스의 학과 또는 유사학과(모체학과)	P-TECH 참여 희망기업
교육과정	전공이론 및 실습	현장실무교육(OJT)
운영방식	야간(금3h, 1일)+주말(토8h, 1일)	주간근무
교수운영	교수	기업현장교사

● 참여기업 혜택

구분	학생 수
기업지원금	훈련프로그램 및 학습도구(학습안내서)지원
	현장훈련(OJT) 비용지원
	전담자수당 지급
정부정책 혜택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지원
	병영특례업체 우선 선정(대기업제외)
	조달청 입찰 가산점

※ 병영특례업체 관련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 참여신청방법

P-TECH사업단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	(032)510-2382
		(032)510-2136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	(032)820-8648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유관기관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기관명	연락처	주소
서울지역본부	02)2137-0474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제3기동대, 형사연수원 (휘경동 49-35)
서울남부지사	02)6907-7121,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당산동 121-102)
서울동부지사	02)2024-1700	서울 광진구 독성로 32길 38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033)248-8500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동내면 학곡리 101-24)
강원동부지사	033)650-570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649-2)
부산지역본부	051)330-1910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부산남부지사	051)620-1910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울산지사	052)220-3262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73(달동 572-4)
경남지사	055)212-72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중앙동 105-1)
대구지역본부	053)580-2362~4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경북지사	054)840-3018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명리 406-1)
경북동부지사	054)230-3223,5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장성동 1370-11)
중부지역본부	032)820-8640~8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경기지사	031)249-1241~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906-0)
경기북부지사	031)850-9132~6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동부지사	031)750-62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광주지역본부	062)970-175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북지사	063)210-9202,1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팔복동 2가 750-3)
전남지사	061)720-8500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조례동 480)
전남서부지사	061)288-3333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대양동 514-4)
제주지사	064)729-0725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대전지역본부	042)580-9161~4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충북지사	043)279-9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신봉동 244-3)
충남지사	041)620-76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신당동 434-2)

※ 중부지역본부 관할 지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김포시

● 공동훈련센터

기관명	연락처	주소
폴리텍 인천캠퍼스	032)510-2125, 2151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032)450-0371~2	인천 남구 염전로 33번길 23
인천인력개발원	032)810-6541~2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
재능대학교	032)890-7773, 7044	인천 동구 재능로 178
유한대학교	02)2610-0673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
인하대학교	032)860-9285	인천 남구 인하로 100
인천대학교	032)835-9436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기관명	연락처	주소
인천기계공고	032)860-0193	인천 남구 한나루로 545
부평공고	032)627-0146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94
부천공고	032)610-7502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20번길 82
인평자동차정보고	032)517-0721	인천 부평구 화랑로 111
인천하이텍고	032)760-9131	인천 남구 석정로 165

● RC(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관명	연락처	주소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032)810-2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논현동 447) 인천상공회의소 5층

● 전문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38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 고용노동부 (☎ 1350)

센터명	관할구역	주소	전화
인천고용센터	인천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31 (구월동)	032)460-4701 Fax. 0505)130-0010
인천북부 고용센터	인천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2~5층 (계산동)	032)540-5641 Fax. 0505)130-0032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중동)	032)320-8900 Fax. 0505)130-0043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3~5층 (장기동)	031)999-0900 Fax. 0505)130-0120

● 홈페이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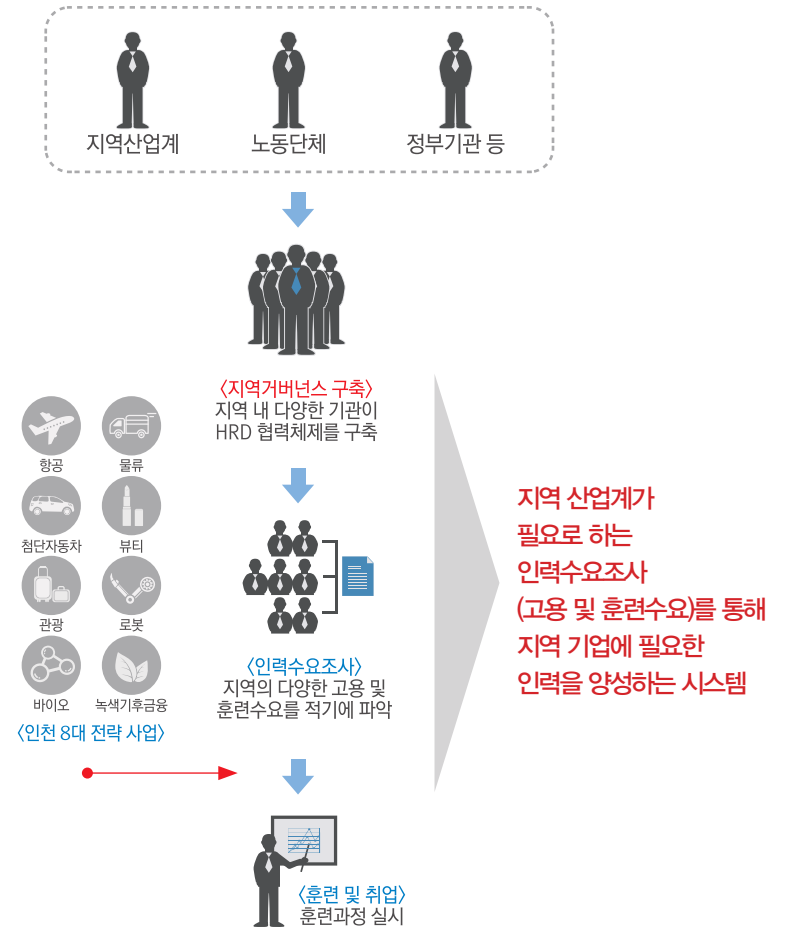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small>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small> http://www.hrdkorea.or.kr	 일학습병행제 <small>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small> http://www.bizhrd.net
 한국산업인력공단 <small>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small> 중부지역본부 http://hrdc.hrdkorea.or.kr/hrdc/incheon	 국가직무능력표준 <small>National Competency Standards</small> http://www.NCS.go.kr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사칭업체주의 안내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전문지원기관 등을 지정하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학습병행제 참여 및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로 부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제 관련하여 **지정 전문지원기관에서는** 기업체로 부터 컨설팅 실시라는 이유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만약,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일학습확산팀, Tel: 052-714-8245) 또는 중부지역본부(Tel: 032-820-8640~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란?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란?



“ 구직자에게는 양성훈련을 제공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재직자에게 향상훈련을 제공하여 업무에 적합한 인재 육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및 주요 훈련과정 소개

>>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교육 훈련 목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술인력
주요 훈련 과정 기계, 자동화, 금형, 전기전자, 가구디자인
파트너 훈련센터 쌍용직업전문학교 /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 (주)창조직업전문학교
주소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5번길 32(고잔동)
문의처 032)810-6594~8, <http://ic.korchamhrd.net>

>> 인하대학교



교육 훈련 목표 인천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공항, 항만, 물류 및 기계·자동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주요 훈련 과정 공항, 항만, 물류, 기계·자동차, 화학안전, 바이오, MICE
파트너 훈련센터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 현대CAD디자인 직업전문학교
주소 인천시 남구 인화로 100(용현동)
문의처 032)860-9211~3, <http://hrd.inha.ac.kr>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육 훈련 목표 산업현장과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
주요 훈련 과정 용접, 금형, 기계, 자동차, 전기, 정보통신
주소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구산동)
문의처 032)510-2121, 2126, <http://sanhak.kopo.ac.kr/incheon>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육 훈련 목표 지역사회와 시대의 요청에 맞는 융합형 기술 인재 양성
주요 훈련 과정 기계, 용접, 전기전자, 금속
파트너 훈련센터 유실희병원 코디네이터학원
주소 인천시 남구 염전로 333번길 23(주안동)
문의처 032)450-0371~5, <http://nic.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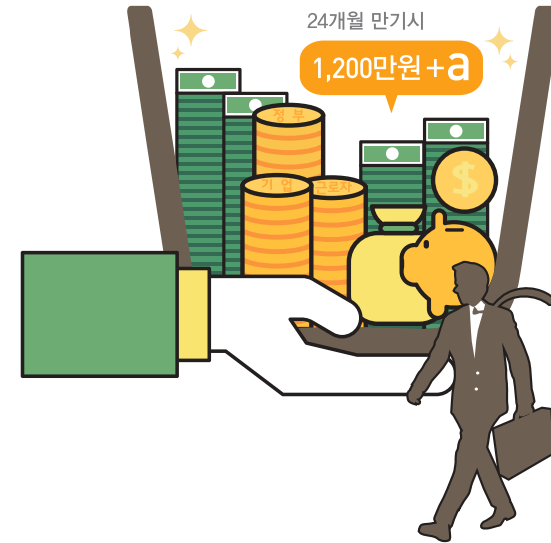
>> 인천대학교



교육 훈련 목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 등 선도산업에 기여 할 혁신적 산업인력 양성
주요 훈련 과정 바이오 의약·화장품·식품·의료기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아카데미로 119 (미추홀캠퍼스)
문의처 032)835-8831, leebowli2@inu.ac.kr

※ 사업계획에 따라 훈련기관 등은 변동될 수 있음.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00만원 + a
*소득공제 가능

2.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적립금	근로자적립금(청년 1인당)
상	600만원 / 2년	300만원 / 2년	300만원 / 2년
중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업당 1인당 100만 원)	기업 계좌로 적립(기업당 1인당 100만 원)	근로자 계좌 사용(연세 10, 20세 중 선택)
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월 100만원 24개월 납입

* 청년공제 가입 및 운영 관련 문의

관할 고용센터	운영기관명	대표전화
인천센터	인천벤처기업협회	032-817-2900
	인천경제자유구역협회	032-428-8046
	(주)제니엘인천지점	032-237-1010
인천북부	(주)제니엘인천북부	032-281-1438
	(주)휴먼잡트러스트	032-822-1825
부천센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070-7094-5469
	(주)미래고용정보	070-7510-8712
	(주)졸은유킵티	032-870-0264

3.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른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입학승행 훈련 실시일 기준 (군필자는 복무기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외부 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하게 입학승행 훈련 과정 종료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지(일학습병행 훈련 시작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4.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업
• 고용유지 기회 및 타 사업 참여시 혜택!
•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 고용 유지
•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기업청 4개 사업 참여 시 혜택 부여

청년
•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
• 본인 기여금 (24개월간 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 4배 이상의 만기공제금 마련
• 만기 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5년)로 전환(가입시 7년 이상 장기적인 목돈 마련 가능)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공제 참여신청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work.go.kr/youngtomorrow 검색
신청시기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 전후 30영업일 이내
신청주체 기업 + 근로자

청년공제 청약신청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sbplan.or.kr 검색
신청시기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 전후 30영업일 이내
신청주체 기업 + 근로자



신청시기의 예외적용
'신학업계획 도제학교' 참여 학습근로자의 훈련 종료일은 해당학교 졸업일로 합니다.

